

대구대학교와 평택대학교 간의 교류에 관한 협정서

대구대학교와 평택대학교(이하 “양 대학교”라 한다)는 상호 유대관계를 강화하고, 교육·연구분야 등에서 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.

제 1조 양 대학교는 호혜주의 원칙에 따라 교직원 및 학문교류를 하기로 한다. 교류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 2조 양 대학교는 학생 및 수업교류를 하기로 한다. 교류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 3조 양 대학교는 공동관심사에 대하여 연구교류하고, 학술 공동연구를 추진한다.

제 4조 양 대학교는 행정, 경영, 관리 프로그램 지원 및 그 밖의 문제에 관하여 협력한다.

이 협정은 양 대학교 총장이 서명한 날로부터 유효하며, 쌍방의 합의에 따라 합의 내용을 수정 또는 폐기할 수 있다.

1998 년 6 월 12 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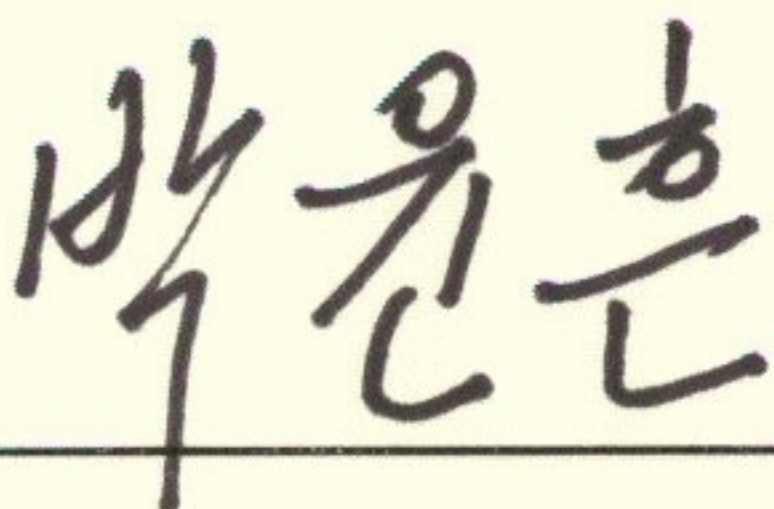
대 구 대 학 교

총 장 박 윤 훈

평 택 대 학 교

총 장 조 기 흥

서명 :



서명 :

